

심사보고서

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8호
심사일자	2026. 6. 15.



위원장 신영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428
------	-----

2026년 6월 15일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5. 27. 송파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6. 6. 1.
다. 상정일자: 2026. 6. 15. 제332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 사항과 근거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사항을 반영하여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위임사무 삭제(안 제1조, 제5조, 안 별표 제10호)
-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으로 전환된 위임사무 조항 신설(안 별표 제12호, 제22호, 제27호~제34호)

○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2)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제2항

3)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의사항: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성별영향평가)

○ 기 타

1) 개정문안, 신·구조문 대조표, 관계법령,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별첨

2) 입법예고: 2026. 3. 26. ~ 2026. 4. 15. (20일)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진미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2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정·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약사법」,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무를 조례에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1년 1월 21일 전부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5조(위임사무)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을 삭제하고,
- ▶ **별표**의 개정은 개별법령에서 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고, 구의회사무국장에 위임된 사무를 삭제하며, 위임사무별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별법령 개정사항과 변경된 근거조문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신설 및 변경하고, 실무에 맞게 위임사무에 대한 수입기관을 현행화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 다만, 개별법령의 개정 취지를 자치법규에 적기에 반영하는 것은 조례의 실효성과 자치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향후 이러한 정비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입법 절차가 요구된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장원만 위원

- 본 개정안은 작년 행감때 본의원이 지적하여 추진된 개정안으로, 다른 조례에 대한 정비, 점검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판단됨.

【답변】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음.

【질의】 최상진 위원

- 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답변】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아 개정을 준비하면서 위임사무와 관련된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한꺼번에 추진하게 되어 개정이 좀 더 늦어짐.

【당부말씀】 최옥주 위원

-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는 수시 점검, 정기 점검 등 체계적인 점검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함.

【답변】 임영우 기획예산과장

- 네, 그렇게 하겠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